

용어사전

방재와 보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사용되는 용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생소한 분야로 느껴지는 예가 많다. 그래서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전문용어를 해설, 소개한다.

방재용어		
<p>● 캐비테이션 (cavitation)</p> <p>펌프의 내부에서 흡입양정이 높거나 유속이 국부적으로 빠른 부분에서는 압력의 저하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p> <p>캐비테이션이 생기면 소음, 진동이 나고 펌프의 성능도 낮아지며 압력이 계속 낮아지면 마침내 양수불능이 된다.</p> <p>● 수격현상 (water hammer)</p> <p>관로에서 유속이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물이 가지고 있는 관성때문에 관내압력이 상승 또는 강하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펌프의 송수관에서 정전으로 펌프에 주고 있던 동력이 갑자기 단절되었을 때나 펌프가 급히 기동할 때 또는 밸브를 급히 닫을 때나 급히 열 때에 발생한다.</p> <p>수격현상이 일어나면 상승압에 의해 펌프, 밸브, 관로 등이 파손되거나 압력강하에 의해 관로가 변경된다. 또한 압력강하에 의해 관로의 어떤 점의 負壓이 물의 증기압 이하로 되면 관내의 물이 분리되어 공동부가 생길 때가 있는데 이 공동부에 다시 물이 찰 때 이상하게 높은 충격압이 일어나 관을 파손하기도 한다.</p>	<p>● 허용전류</p> <p>주위의 법칙에 의하면 전선에 전류가 통하면 전선의 2제곱에 전선의 저항을 곱한 양에 해당하는 주열(I^2R)이 발생한다. 도체(전선)에 과전류를 통하면 온도가 상승하여 절연피복물이 변질되어 타거나 심하면 도체가 용단되는 경우가 있다. 전선의 수명을 장시간 유지시키려면 도체의 단면에 따라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한계가 있다. 이것을 허용전류 또는 안전전류라 한다.</p> <p>● 신축</p> <p>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속건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으로 본다.</p> <p>● 증축</p> <p>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 혹은 수평방향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의 증가는 물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동일 대지안에 별도로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p> <p>● 개축</p> <p>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p>	<p>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이란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의 규모가 같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p> <p>● 재축</p> <p>개축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축조로 보나 개축은 자의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축조하는데 비하여 재축은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에 의하여 피멸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p> <p>● 대수선</p> <p>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내력벽의 면적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보·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획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색채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p>

보험용어

● 보험 (insurance)

개인의 생활이나 기업의 경영에 있어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은 예측할 수가 없다. 보험은 예상되는 여러 우발적인 위험에 대하여 금융적인 수단에 의하여 대비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제도의 발달에 따라 해상보험, 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이 나타났다. 이들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일정한 불확실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거나 또는 일정한 금액 또는 연금의 지급,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이며, 그 당사자가 일정한 계산에 따라 동종의 계약을 다수적으로 체결하는 특성이 있다.

● 공제제도

원시적 보험의 기본형태로서 보험과는 대조적이다.

일반적으로 공제라고 하면 상부상조의 친목단체로서 가입자의 각종 재난과 고통사에 대해서 일정한 부조를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그 특징은 가입범위의 폐쇄성, 공평한 각출, 급부의 영세성 등이다. 우리나라에는 농협공제, 수협공제, 건설공제, 해운공제, 교련공제 등이 있다.

● 화재손해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 즉 화재손해를 보상한다. 화재에 의한 손해의 요건으로는 연소의 존재, 원래 연소되지 않을 물질이 연소

된 사실의 존재, 화재발생의 우연성을 들 수 있다.

화재손해의 범위는 화재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화재가 원인이 되는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이다.

● 면책 (exclusion of sum payment)

법 또는 약관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지불의 책임이 없는 것, 즉 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전쟁 또는 변란에 의해 생긴 보험사고, 보험계약자의 사고유발, 보험목적물 성질의 하자 또는 자연소멸로 인한 손해 또는 지진, 분화, 폭동 등에 의한 사고 등이 해당된다.

● 확장담보 (extended coverage)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확장하여 풍해, 폭발, 소요, 동맹파업에 동반하는 소요, 폭동, 항공기의 추락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차량의 충돌 및 연기피해를 담보하는 특약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추가보험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주택, 공장, 창고 등 대부분의 물건에 대하여 보통약관 속에 이들의 위험담보가 첨가되거나 혹은 특약으로서 확장담보가 실시되고 있으며 더욱이 외국에서는 지진위험담보에 까지 발전했다.

● 기계보험 (machinary insurance)

각종 기계, 기계설비 또는 기계장치의 운전중에 생기는 불의의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사고는 종업원이나 제3자의 고의, 과실 또는 취급상의 졸렬, 전기적사고, 보일러내의 물부족으로 인한 사고, 물리적 폭발 등이다. 설계, 구조, 재질의 결함과 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통약관으로 당연히 담보하는 경우와 특약이 있어야만 담보하는 경우가 있다.

● 유사보험

이론상으로는 보험기술적 요건을 완전 구비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공제형태의 상호보험조합을 말한다. 따라서 소상호보험조합, 공제, 비합리적인 자가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 수선할증

신축, 개축, 또는 수선, 증축, 철거공사의 건물시설 및 수용동산과 가설공작물설비 및 이들의 재료에 부가하는 「건축할증」에 속한다. 수선하는 현장에는 가연성 물질이 다량있을 것이며 또한 화기관리에 소홀하기 쉬우므로 그 위험에 대하여 이 할증이 마련되었다.

개축 또는 수선중인 건물과 시설, 그 수용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의 구조 급별을 변경하지 않고 이 할증을 부가하며 다만 공사의 예정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부가하지 않는다. ☹